<별표 14>

장내·장외파생상품거래의 계약금액

(제4-71조제1항 관련)

(단위 : 백만원)

구 분	거래대상	거래유형	매수(1)	매도(2)	순포지션(1-2)	비고
신 규						
누 계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거래대상은 통화, 증권, 금리, 실물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2) 거래유형은 선물, 옵션, 스왑 등으로 구분한다.
3) 신규는 당해 계약을, 누계는 신규계약을 포함한 계약누계를, 합계는 매수·매도·순포지션 누계의 합을 각각 기재한다.
4) 비고란에는 장내 또는 장외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승수효과(leverage)를 함께 기재한다.
5) 스왑의 경우 매수 및 매도의 구분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다.